성주군청 및 읍·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: 성 주 군 수

2. 개정이유

○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 3권역(수륜, 가천, 금수)을 추진하고,
○ 읍·면사무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례로 명시하고 행정안전부의 '16년도 복지허브화 관련 읍·면사무소 명칭변경지침을 반영하여 "가천면사무소"의 명칭을 "가천면 행정복지센터"로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면사무소 명칭변경(안 별표)
- 가천면사무소 ⇒ 가천면 행정복지센터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6조 및 「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제14조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○ 규제심사 : 해당 없음 [기획감사실-9470(2017.10.20.)]
○ 성별영향평가 : 제외대상(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3호)
○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예고기간 : 2017.10.19. ~ 2017.11.08.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2016년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범대상 읍면동사무소의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읍면동 복지허브화 3권역 중심면인 가천면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
○ 주요 개정 내용으로

- 조례안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읍면명칭 중 2016년 제1권역인 성주읍 행정복지센터, 2017년 제2권역인 초전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어 2018년 상반기부터 추진 예정인 제3권역 복지허브화 사업 중심면인 “가천면사무소”의 명칭을 “가천면 행정복지센터”로 변경한 것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허브화사업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